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ental Support, Organizational Culture, and Marriage Support Policies
on the Intention of Marriage of Unmarried Workers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황인자**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Social Welfare Graduate University
Special Professor Hwang, In Ja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결혼의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결혼의향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경제자원은 월평균소득과 자산총액을 측정하였고, 부모의 지원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도구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는 김혜영, 선보영과 김상돈(2010)의 근무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Beauvais & Lyness(1999)의 도구 중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김혜영 외(2010)의 도구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을 추가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총 480부 자료를 IBM SPSS 1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직장인 결혼의향의 유의미한 차이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총액, 부채유무로 나타났고,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도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연령,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가족친화조직문화와 자금주택정책필요성도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과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도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향상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다.

주제어 : 결혼의향, 부모의 지원, 가족친화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필요성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individual, parental, workplace, and policy variables on the intention of marriage of unmarried worker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to come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주저자, 교신저자: 황인자(lily6310hope@naver.com)

up with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increase these workers' intention of marriage.

Methods : Data was collected from 480 participants through a questionnaire. The measuring tools in this study were tested for reliability and validity. In addition, technical statistic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by SPSS 18.0.

Results : First, unmarried workers' willingness to marry was higher above the average.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married workers' intention of marriage were revealed based on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total assets, and debt status.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also found with parents' economic levels and the possibility of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and marriage expenses. The differences in response based on employment patterns, job satisfaction, and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were also significant. The correlation between policy variables and marriage intentions also showed the necessity of a funded housing policy and a marriage preparation policy. Third, based on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personal, parental, and workplace variable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unmarried workers' willingness to marry, it is clear that gender, age, and the likelihood of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and marriage expenses have a significant impact. A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nd funded housing policy were also significant contributors.

Conclusion : The study found that the funded housing polic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unmarried office workers' willingness to marry. Additionally, the possibility of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and marriage expenses and a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t work were found to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unmarried workers' willingness to marry.

Key words : intention of marriage, parental support, family-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necessity of marriage support policy

I. 서론

우리 사회는 청년층의 결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혼인 건수가 2011년에 329,087건이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는 257,622건으로 21.7%p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 연령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2008년 남성 31.4세, 여성 28.3세와 비교하여, 2018년에는 남성은 33.2세, 여성은 30.4세로 상승하였다(통계청, 2019).

결혼을 성인기의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과거 세대와 달리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008년에 남성은 76%, 여성은 63%에서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하락하여, 2018년 남성은 52.8%, 여성은 43.5%로 나타났다(정기선, 2009; 통계청, 2019).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왕석순·전주람·류경희, 2015), 혼인 건수 하락은 생산노동공급, 소비, 인구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며, 잠재성장률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김성준, 2015).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 약화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이 결혼 선택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홍성희, 2020), 가치관의 변화를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특정 세대의 인식 및 가치는 평면적으로 형성되지 않고, 사회의 역사적·구조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이삼식, 2006).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닌 코호트¹⁾(同期集團, cohort) 세대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가치관과 생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김기연·신수진·최혜경, 2003). 개인의 결혼이전 생애과정은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자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의 결혼할 가능성이, 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보다 낮게 나타났고, 여자는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의 결혼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은기수, 1999). 미혼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에 대한 연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자원, 가치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교육수준, 근로소득유무, 가계경제만족도와 자녀가치관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자녀가치관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부정적일수록 결혼의향을 가지고 있었다(홍성희, 2020). 이 연구에서 가계경제만족도는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가족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변인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연령대인 2019년 기준, 20대~40대 미혼직장인은, 1970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성장과정에서, 시대적 상황의 직접 또는 간접 경험의 영향을 받으며 결혼 가치관, 직업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20세인 미혼직장인은 1999년에 출생했고, 2019년 40세는 1979년, 49세는 1970년에 출생했다. 1970년대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해 빈곤을 경험한 자가 많았

1) 세대사회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행동양식 등을 공유하는(경험하는) 집단,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 의한 사회화 과정을 거친 연령 집단을 의미한다(베이비부머세대, 386세대 등).

고, 1980년대는 정치적 혼란기로 부모세대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던 시기였다. IMF 외환위기(1997년 12월 3일~2001년 8월 23일)와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2008년)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켰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으로 어린시기부터 빈곤의 고통을 경험한 미혼직장인이 있고,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경험한 경우도 있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다양한 환경체계와 관련될 수 있다. 가족구성원이 소유한 가족자원 수준, 직장의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밀접한 환경체계인 가족자원은 삶의 질과 인생설계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자원이란 가족이 목표를 달성하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포함하는데, 인적·물적 자원은 가족이 소유한 자원일 수도 있지만, 가족을 둘러싼 환경 전체가 가족이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정영금, 2008). 국가나 사회의 시설과 제도는 광역환경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접환경이나 광역환경이 포함하는 자원이 풍부하면 가족 고유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정영금, 2008). 가족 고유의 자원이 절약되면 가족의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적 자원 창출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자생력을 가진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는 복지수혜자임과 동시에 복지를 공급하는 복지의 주체가 될 수 있다(조희금, 2003).

가족자원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삶의 질과 연관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역할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 주고 얻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도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임소진·어성연, 2011).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임소진·어성연, 2011)에서 가족영역 부모자녀관계 변인으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정도', '부모역할 만족도', '자녀의 기대부응 정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 등이 분석에 활용되었는데, 가족구성원 간의 일상적 친밀감보다 부모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소진·어성연, 2011).

가족자원의 활용과 관련하여 성인기에 진입해서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미혼층이 증가하고 있고, 신혼집 마련 및 결혼비용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비용을 지원받는 비율은 여성이 75.5%, 남성이 68.3%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신혼집 마련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여성이 24.3%, 남성 70.5%로, 남성의 지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김영란·장혜경·이윤석, 2018). 현대 50-60대의 중년층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에 경제적 성취를 경험한 본인들과 달리,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자녀들을 위해, 교육비 지출 부담을 필수적으로 수용하고, 결혼비용에 대한 지원, 주택마련비용 지원, 손자녀 양육에까지 경

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김순미·고선강, 2012).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전환을 맞는 사건이 자녀의 결혼인데, 베이비부머들은 자녀의 독립과 분가를 위해 신혼 전셋집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목돈을 지원해 준다(홍성희, 2019). 또한 연구에서 부모 및 가구구성원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가계경제만족도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홍성희, 2020). 가계경제만족도는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부모와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자산에 바탕을 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결혼이행에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결혼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가족자원은 단순히 가구구성원의 자원으로만 볼 수 없고, 사회적 자원으로써 가치 및 역할과 연관되므로 합리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 가족자원경영은 가족들이 가치 있다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윤소영, 2013).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 가능한 자원이 무한하지 않고, 부모세대의 노후준비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부양 책임대상인 청·장년층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윤정·고선강, 2011). 이러한 요인이 가족자원의 형성과 축적에 부적인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중·장년기 부모가 제공하는 주택마련 및 결혼비용은 자녀의 결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족자원의 감소 및 소진은 가족건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인 돌봄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한다.

직장에서 부여되는 과중한 업무와 장시간 근로 관행, 직장 내 경직된 조직문화가 미혼직장인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44세의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결혼생활과 직장 업무 양립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6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장시간 근로가 '관행'으로 만연화 되어 있다(김근주, 2018).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에너지와 시간 부족을 경험하여 이성교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만혼유발의 원인으로 밝혀졌다(어성연·조희금·고선강, 2010).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혼인 건수와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을 감지하여 국가 차원의 결혼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2006-2010)'에서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를 강조하였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2011-2015)'은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결혼 장려 위한 사회적 배려 강화와 관련 교육 정책 등이 도입되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고용 창출과 일자리의 질 제고, '청년 예비부부 주거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혼인 건수가 하락하면서 ‘결혼의향’ 관련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미혼남녀(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임선영·박주희, 2014; 탁현우, 2017; 한영선, 2015; 홍성희, 2020)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거나, 대학생(박주희, 2016), 청년층(주휘정·김민석, 2018) 및 결혼적령기 청년(최필선·민인식, 2015)을 조사대상자로 지목하여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미혼직장인을 연구대상자로 설정하여 진행된 결혼의향 관련 연구는 소수로 밝혀졌다(박주희, 2017; 조진영, 2016). 미혼남녀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와 대학생 대상 연구, 소수의 취업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소득 등 경제자원과 결혼의향 관계(원아름, 2015; 이정은, 2017; 박주희, 2017)를 파악한 연구가 있고, 가구소득과 결혼의향(김중백, 2013; 김혜영·선보영, 2011), 경제적 배경(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부채)과 결혼의향(김정석, 2006; 주휘정·김민석, 2018)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부모의 자원제공 변인과 결혼의향(박혜민, 2017; 조진영, 2016; 한영선, 2015; 홍은영, 2011),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의향(진달래·고선강, 2013),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김혜영·선보영, 2011;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 이정은, 2017; 진달래, 2013),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홍성희, 2020)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들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을 위해 분석하였으나, 미혼직장인과 연관된 환경 체계 변인들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여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과 관련 변인’ 연구(김예리, 2008)가 진행되었는데,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혼지원정책과 결혼의향 관계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는 제 3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결혼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의 연구로서 추가된 정책이 투입될 수 없었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소수에 불과하고, 환경 체계 변인들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므로, 가족자원을 포함한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변인, 가족변인, 제도변인, 사회문화변인, 인구조화학적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한 연구(이정은, 2017)가 있지만, 결혼과 연관되는 주택결혼비용지원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직무만족도가 높은 여성의 결혼의향이 낮게 나타난 연구가 존재하지만 소수이기 때문에(김혜영·선보영, 2011), 미혼직장인의 직장생활과 결혼의향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미진하다. 또한 가족친화조직문화와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 진달래, 2013; 탁현우, 2017)가 존재하지만,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진

행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과 결혼의향 관련 연구(이정은, 2017)도 있는데, 여성으로 한정되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가족자원과 관련된 미시체계를 포함하고, 중간체계와 거시체계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가족자원과 가족자원경영의 효율적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감지하도록 하고,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적 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태학적 체계이론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체계이론과 생태학적 개념을 통합한 이론으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론이다. 인간과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이 상호작용의 과정인 적응과 진화 과정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총체적 인간관을 지향한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개인과 환경간의 적합성, 상호교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에 대한 포괄적인 실천지식을 제공한다(권중돈·김동배, 2005).

Urie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과정을 분석하면서 체계론적 관점을 확대하여 ‘생태적 체계(Ecological Systems)’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성장하는 유기체와, 유기체가 실제 거주하고 성장 및 변화하는 환경 간에, 일생 동안 일어나는 조절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광범위한 접근법인 ‘인간발달생태학이론(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을 제시했다. 인간을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는 유기체로 보고,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연구는 맥락 내(development-in-context)의 인간발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은혜, 2015).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chronosystem)로 구분하고, 각각의 환경체계가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허창덕, 2012). Bronfenbrenner(1979)는 생태학적 환경 내에서의 개인의 위치 변화는 발달과정의 결과이자 원인이 된다고 했다

(유계숙·최연실·성미애, 2003). 인간은 성장·발달과정에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미시체계(microsystem)는 가장 직접적인 사회적·물리적 환경으로 가족구성원이 해당되며 생애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경제수준과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간체계(mes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혹은 특정한 시점에서 미시체계들,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이 용이한 조직문화는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유계숙, 2008).

외체계(외부체계, exosystem)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 부모의 직장, 정부, 사회복지기관, 대중매체 등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체계이다. 부모의 직장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에 포함된 모든 요소에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윤리와 가치, 신념, 관습, 규범, 문화, 정책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개인의 삶에 간접적이지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거시체계의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유기체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ronfenbrenner(1995), 이은혜, 2015 '재인용'). 결혼지원정책과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은 거시체계로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원정책인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시간체계(chronosystem)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와 역사적 환경을 포함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성장·발달 과정에서 직접·간접 경험들이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거친 미혼남성의 결혼할 가능성이, 비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보다 높았다. 미혼여성은 비정상적인 생애과정을 경험자가 정상적인 생애과정 경험자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은기수, 1999).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생태학적 체계이론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선행 연구 고찰

1) 개인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성별

성별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반적인 통계적 수치에서 미혼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외, 2017; 고선강·어성연, 2013; 김중백, 2013; 김정석, 2006; 박주희, 2017; 조진영, 2016). 가족배경, 사회경제적 지

위, 결혼가치관 조건이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중백, 2013).

(2) 연령

미혼남녀의 연령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김혜영·선보영, 2011; 서정연, 2018; 원아름·박정운, 2016; 이정은, 2017; 이삼식, 2006; 이지나·황명진, 2018; 탁현우, 2017; 홍성희, 2020).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상반된 영향력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고, 일정 시점 이후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 남성은 연령이 높아도 결혼의향이 낮아지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어성연 외, 2010).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가 있고(한영선, 2015), 25세~29세까지 결혼의향이 상승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있다(홍은영, 2011). 반면 미혼남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도 존재한다. 미혼남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았고(임선영·박주희, 2014),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휘정·김민석, 2018).

(3) 교육기간

미혼남녀의 교육수준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혼자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결혼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권소영 외, 2017; 김정석, 2006; 이삼식, 2006; 이정은, 2017; 한영선, 2015; 홍성희, 2020)가 존재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미혼여성이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진 연구도 존재한다(김혜영·선보영, 2011). 남성의 교육수준이 결혼이행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최필선·민인식 2015).

(4) 월평균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

미혼남녀의 경제자원과 결혼의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 중 30대 미혼남녀 668명의 경제자원(가구소득, 주택보유, 개인근로소득)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

과, 개인근로소득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고선강·어성연, 2013). 개인근로소득 '상'에 속하는 미혼여성들은 '중', '하'수준의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 갖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미혼남성들은 개인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결혼의향이 없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남녀의 월 소득은 결혼의향과 결혼이행과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29세 이상~44세 이하의 여성 미혼·기혼 총 1,5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김혜영 외, 2010)에서 미혼여성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미혼남녀 300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에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이하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근로소득이 없는 미혼자에 비해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자가 결혼할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성희, 2020).

개인의 소득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과 결혼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일관적이지 않고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도 증가하였고(탁현우, 2017). 남성의 임금이 높아질수록 결혼 이행 확률이 높아졌다(최필선·민인식, 2015).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 영향 연구 결과는 여성의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주휘정·김민석, 2018)

2) 부모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부모 경제 변인과 결혼의향

부모의 경제 변인 중 금융자산이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세~49세의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한영선, 2015)결과 부모의 부동산 자산과 소득, 기타자산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부모의 금융자산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으로 나타나 금융자산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결혼의향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결혼의향

부모의 경제자원, 지원되는 자원 제공이 미혼자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양상을 일관적이지 않다.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남녀 중 청년 여성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소영 외, 2017). 부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분석(박혜민, 2017)결과, 결혼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집단이 불가능하다는 집단보다, 기능적 결혼의향과, 정서적 결혼의향, 당위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결혼자금지

원 수용 인식이 높은 미혼남녀의 기능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박혜민·전귀연, 2018),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임선영·박주희, 2014).

부모의 경제자원과 지원되는 자원 제공 빈도와 제공 수준이 미혼자녀의 결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한다. 부모가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 전이 증가할 때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만 20~29세의 남녀 774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박지수·이재립, 2016)에서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자주 받은 청년이 부모의 진로기대를 높게 인식하고, 이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부적영향을 미쳐 결혼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자원과 연관된 변수로, 조사대상자를 포함하여 부모와 가구구성원의 소득 및 자산에 바탕을 둔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가계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홍성희, 2020).

3) 직장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1) 취업여부, 고용형태, 근무 직종, 직무만족도와 결혼의향

미혼남녀의 취업여부, 고용형태, 직종, 직무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혼남녀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주희, 2017; 박혜민, 2017)가 있고, 비정규직의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가 존재한다(탁현우, 2017). 30대 미혼남녀 모두 취업 여부는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규직 여부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선강·어성연, 2013). 미혼여성의 직종을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전업주부, 기타/무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결과 블루칼라 집단에 비해 화이트칼라 집단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은 관리전문가, 사무종사자 집단이 결혼의향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상용직 집단이 일용직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규직 취업여성이 비정규직 보다 결혼의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한영선, 2015). 직무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직장만족도가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2) 기업의 조직문화와 결혼의향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조직문화와 결혼의향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지만 그 수가 많지 않다(김혜영·선보영, 2011; 어성연 외, 2010; 진달래, 2013). 28세 이상 40세 이하의 전문직 미혼남녀 1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으로 만혼현상에 대해 진행된 연구(어성연 외, 2010)결과 전문직 미혼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고, 출산 시 휴직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출산휴가 사용 시 직장에서의 도태될까 걱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장의 과도한 업무가 에너지와 시간 등 자원고갈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성교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영향은 전문직 미혼여성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쳐 만혼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지원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탁현우, 2017)에서 여성의 미혼 이유 중 결혼으로 인한 부담, 일·가정갈등으로 인한 결혼기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갈등은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미혼여성들은 결혼을 고려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4) 정책 관련 변인과 결혼의향

국가에서 시행하는 결혼지원정책의 세부 내용이 미혼층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준비 유급휴가제도,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결혼자금융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미혼층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영·선보영, 2011).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 취업미혼남녀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지원정책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진행된 연구(박주희, 2017)에서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결혼지원정책의 직접적 정책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남녀의 당위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으로 결혼정보제공 정책의 유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민, 2017). 또한 국가의 결혼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미혼여성의 결혼의향이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진 연구(이정은, 2017)가 있고, 결혼장려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진달래, 2013).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 남녀의 결혼관 관련 변인 연구(김예리, 2008)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관련 정책(결혼생활을 지원하는 가족생활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결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연구 진행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연구윤리 확보 절차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신청하여 심의 면제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²⁾.

2) 2019년 5월 24일 본 연구에 대한 심의 면제 승인을 받음(승인번호 SSWUIRB 2019-013).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미혼직장인이 많은 지역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경기도·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연구대상자 연령대의 미혼직장인 15인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고, 사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수정·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조사도구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 비밀보장, 연구목적, 질문항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한 후 응답한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링크를 공유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인 추천 대상자들에게는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집하였다. 설문지 자료는 총 521부를 수집하였는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41부를 제외한 480부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수준과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의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혼을 선택하여 이행하고자 하는 생각 및 관념’으로 정의하였다. ‘결혼의향은 등재지의 선행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에서 사용한 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귀하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로 질문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더 긍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개인 관련 변인

① 성별, 연령, 교육기간

성별은 여자(1), 남자(2)로 코딩하여 구분하였다. 연령은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만 나이를 조사하였다. 분산분석에는 '20대', '30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교육기간은 공교육을 받은 기간으로 조사하였는데, 중학교 졸업자는 9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으로 측정하였다. 분산분석에는 '고졸이하', '대졸이하',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서 성별은 가변수로, 교육기간과 연령은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월평균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

연구대상자의 월평균소득은 최근 3개월 월평균 근로소득(세금 공제 이적 금액)을 조사하였다. 자산총액은 조사대상자의 금융자산(주식 펀드, 적금 보험 연금 예금 등)금액과 부동산 자산(주택, 토지 등)금액, 기타자산(자동차 등)금액을 각각 조사한 후, 세 가지 유형의 자산 액수를 합산하였다. 부채유무는 부채가 있다고 답한 경우 1로,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0으로 구분하였다. 회귀분석에 월평균소득은 자연로그를 취하여 투입하였고, 자산총액은 제곱근을 취하여 투입하였다.

(2) 부모 관련 변인

① 부모월평균소득

부모월평균소득은 조사대상자 부모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정부지원,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 포함) 총액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기술통계를 위해 부모월평균소득을 4분위수로 나누어 '0~250만원'(25%=1), '251만원~400만원'(50%=2), '401만원~500만원'(75%=3), '501만원 이상'(100%=4) 분류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부모월평균소득은 제곱근(square root)을 취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② 부모경제수준

부모경제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부모님 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여 측정하였고, 분산분석을 위해 '상', '중', '하'로 재분류 하였고, 회귀분석에는 '상', '중상', '중', '중하', '하'를 5점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③ 거주현황

거주현황은 미혼직장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분리된 주거공간에서 거주하는지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거주현황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부모함께거주' 1, '전월세따로거주기타' 0으로 하여 투입하였다.

④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부모가 조사대상자에게 주택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을 지원할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부모로부터 주택 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역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주택자금, 전세자금, 결혼비용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직장 관련 변인

① 고용형태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정규 계약직, 단기 계약직, 일용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정규직=1,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0으로 코딩하였다.

② 직종

근무 직종은 전문 경영직, 일반관리 사무직, 기술 기능 생산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서비스직, 농림어업직, 단순노무직, 학생/기타/무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해 직종 1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전문경영직은 1,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은 0으로 하였다. 직종 2는 기술기능생산직은 1,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은 0으로 하여 투입하였다.

③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직장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와 기대, 직무 수행을 비롯하여 근무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 감정 상태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해 김혜영 외(2010)가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급여(소득)수준, 근로시간, 직장(사업)의 성장가능성, 고용 안정성, 승진 기회, 퇴직금, 출산(육아)휴직, 휴가 등 복지수준, 능력 개발 기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해당 없음'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직무만족도 측정 도구 Cronbach α 는 총 7문항 .879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는 7항목 전체 평균값을 산출하여 연속변수로 투입하였다.

④ 가족친화조직문화

가족친화적조직문화는 종업원의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으로 정의된다(Tomson et al., 1999; 방묘진, 2004).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조직문화 인식에 대해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서 도입하고 있는 가족친화적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사 및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충성도 여부 인식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 가능하고, 일·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연한 분위기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가족친화조직문화는 Tomson et al.(1999)이 개발한 도구 20문항 가운데 방묘진(2004)의 연구에서 활용한 1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방묘진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적 하

위 개념인 근무시간에 대한 기대정도 3문항, 불이익에 대한 우려정도 4문항, 조직의 관리적 지원 7문항으로 분류하여 7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14문항 가운데 1, 4, 5, 6, 7, 13번 문항을 역코딩하여, 전체 14문항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친화조직문화 전체의 Cronbach α 값은 .905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

변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분석을 위한 코딩	Cronbach α	
종속변수	결혼의향	-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성별	- 연구대상자의 성별	여자=1, 남자=0	
	연령	- 연구대상자의 만 나이	20~29세=1, 30~39세=2, 40세 이상=3	
개인관련 변인	교육기간	- 공교육 받은 기간	고졸이하=1, 대졸이하=2, 대학원이상=3	
	월평균소득	- 최근 3개월 월평균소득(세금공제 이전 금액)	자연로그 취함	
	자산총액	- 연구대상자의 자산총액 -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총액	제곱근 변환	
	부채유무	- 부채 유무	있다=1, 없다=0	
부모관련 변인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 매우 높음=1, 높음=2, 보통=3, 낮음=4, 매우 낮음=5	매우 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 매우 낮음=1 (역코딩)	
직장관련 변인	급여수준	- 급여수준		
	근로시간	- 근로시간	매우불만족=1, 약간불만족 =2, 보통=3, 약간만족=4, 매우만족=5, 해당 없음=6 (7항목 전체 평균값 산출 투입 분석)	.879
	직무만족도	- 성장가능성 -고용안정성 - 승진기회 -퇴직금 -출산(육아)휴직 - 휴가 등 복지수준		
가족친화 조직문화	가족친화	- 근무시간 기대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7, 그렇지 않다=6, 별로 그렇지 않다=5, 보통이다=4, 약간 그렇다=3, 그렇다=2, 매우 그렇다=1 (1,4,5,6,7,13 항목 역코딩)	.905
	불이익에 대한 우려	- 불이익에 대한 우려		
정책관련 변인	조직관리 지원	- 조직관리 지원		
	자금주택정책 필요성	- 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주택자금대출 - 신혼부부주택구입, 전세자금지원 - 청년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청년예비부부 전세임대주택, - 근로자 혼례비(결혼자금) 융자 - 결혼준비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 주택 공급 대책 확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	.919
	일자리정책 필요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고용 환경 조성 (정시퇴근,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연가사용 활성화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제고 및 창업활성화 해외 취업촉진 - 청년이 체감 가능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교육 고용 연결고리 강화	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	.836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 이성 간의 만남의 장 제공 -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전혀 필요하지 않다=1 별로 필요하지 않다=2 보통이다=3 어느 정도 필요하다=4 매우 필요하다=5	.918

(4) 정책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 결혼지원정책은 '미혼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미혼자의 결혼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자금주택정책, 일자리정책, 결혼준비정책을 등을 포괄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결혼지원정책필요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혜영 외(2010)의 도구를 활용한 연구(박주희, 2017)의 도구에 정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 발표한 정책을 추가하여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결혼지원정책필요성은 14개의 세부 정책을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14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3개 요인을 추출하였고, 각각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으로 명명하였다.

①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은 임대주택필요성, 주택자금대출필요성,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지원필요성, 청년신혼부부매입·전세임대주택필요성, 결혼자금융자필요성, 결혼유급휴가필요성,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확대필요성 등 7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7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19이다.

② 일자리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은 일가정고용환경필요성, 유연근무제택원격근무필요성, 청년일자리창출필요성, 고용지원인프라확충필요성 등 4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자리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4문항의 Cronbach α 값은 .836이다.

③ 결혼준비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은 결혼관련정보제공필요성, 만남의장제공필요성,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필요성 등 3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는 Likert 척도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인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총 3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18이다.

4. 분석 방법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가사회학적인 특성 및 주요변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미혼직장인의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후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증분석(Scheffe)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조사기간에 직장에 근무 중인 미혼 직장인 남자와 여자이다.

종속변수인 결혼의향은 '전혀 그렇지 않다' 51명(10.6%), '별로 그렇지 않다' 86명(17.9%), '보통이다' 108명(22.5%), '대체로 그렇다' 132명(27.5%), '매우 그렇다' 103명(21.5%)이고 평균은 3.31점(SD=1.28)이었다.

연구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개인 관련 변인에서 성별은 '여자' 269명(56%), '남자' 211명(44%)이었다. 연령은 '20대(20~29세)' 239명(49.8%), '30대(30~39세)' 184명(38.3%)이었다. 교육기간은 '고졸 이하(12년 이하)' 59명(12.3%), '대졸 이하(13-16년)' 348명(72.5%)이었다. 월평균소득은 '0~200만원' 123명(25.6%), '201만원~300만원' 171명(35.6%)이었다. 자산총액은 '2501만원~5000만원' 128명(26.7%), '5,001만원~10,400만원' 108명(22.5%)이었다.

부모 관련 변인 중 부모 월평균 소득은 '0~250만원' 131명(27.3%), '251만원~400만원' 142명(29.6%)이었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음' 40명(8.3%), '높음' 119명(24.8%), '보통' 135명(28.1%), '낮음' 94명(19.6%), '매우 낮음' 92명(19.2%)이었다.

직장 관련 변인에서 고용 형태는 '정규직' 351명(73.1%), '비정규계약직' 90명(18.8%)이고, 직종은 '전문경영직' 94명(19.6%), '일반관리사무직' 204명(42.5%),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182명(37.9%)이었다. 직무만족도 평균은 3.16점이었고, 가족친화조직문화 평균은 4.28점이었다.

정책 관련 변인 중 결혼지원정책필요성 14항목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 평균은 4.08점이고, 일자리정책필요성 평균은 4.09점이고, 결혼준비정책필요성 평균은 2.80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n=480)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결혼의향		전혀 그렇지 않다	51	10.6	3.31	1.28		
		별로 그렇지 않다	86	17.9				
		보통이다	108	22.5				
		대체로 그렇다	132	27.5				
		매우 그렇다	103	21.5				
개인 관련 변인	성별	여자	269	56	337.69	279.94		
		남자	211	44				
	연령	20대(20~29세)	239	49.8			31.15	6.30
		30대(30~39세)	184	38.3				
		40대 이상(40세~53세)	57	11.9				
	교육기간	고졸 이하(12년 이하)	59	12.3			15.68	1.69
		대졸 이하(13~16년)	348	72.5				
		대학원재학 이상(17년 이상)	73	15.2				
	월평균소득	25%(0~200만원)	123	25.6			337.69	279.94
		50%(201~300만원)	171	35.6				
		75%(301~360만원)	69	14.4				
		100%(361만원 이상)	117	24.4				
	자산총액	25%(0~2,500만원)	125	26.0			9279.83	12024.90
		50%(2,501~5,000만원)	128	26.7				
		75%(5,001~10,400만원)	108	22.5				
100%(10,401만원 이상)		119	24.8					
부채 유무	있다	172	35.8					
	없다	308	64.2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 소득 (연속)	25%(0~250)만원)	131	27.3	441.61	330.99		
		50%(251~400만원)	142	29.6				
		75%(401~500만원)	95	19.8				
		100%(501만원 이상)	112	23.3				
	부모 경제 수준	상	93	19.4				
		중	219	45.6				
		하	168	35.0				
	거주현황	부모와 동거	268	55.8				
		전·월세 따로	155	32.3				
		기타	57	11.9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매우 높음	40	8.3	3.16	1.23		
		높음	119	24.8				
보통		135	28.1					
낮음		94	19.6					
매우 낮음		92	19.2					
근무 직종	전문경영직	94	19.6					
	일반관리사무직	204	42.5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182	37.9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정규직	351	73.1	3.16	0.88		
		비정규계약직	90	18.8				
		단기 계약직	35	7.3				
		일용직	4	.8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3.16	0.88
가족친화 조직문화	가족친화 조직문화			4.28	1.08			

	구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정책관련 변인	자금주택정책 필요성	1. 임대주택 필요성		4.05	.98
		2. 주택자금대출필요성		4.34	.86
		3. 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지원 필요성		4.30	.92
		4. 청년신혼부부매입·전세 임대주택 필요성		4.22	.92
		5. 결혼작금용자 필요성		3.62	1.08
		6. 결혼유급휴가필요성		3.97	1.05
		11.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 확대 필요성		4.05	1.02
		자금주택정책필요성 (7문항 평균)		4.08	.80
	일자리정책 필요성	7. 일가정고용환경 필요성		4.32	.86
		8. 유연근무제택원격근무 필요성		4.21	.94
		9. 청년일자리창출필요성		3.89	1.01
		10. 고용지원인프라확충 필요성		3.92	1.00
		일자리정책필요성 (4문항 평균)		4.09	.78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12. 결혼관련정보제공 필요성		3.01	1.23
13. 만남의장제공 필요성			2.57	1.27	
14.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필요성			2.82	1.32	
		결혼준비정책필요성 (3문항 평균)		2.80	1.18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1) 개인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개인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기간, 자산 총액, 부채 유무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남자 3.58점, 여자 3.1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미혼직장인 남자들의 결혼의향이 미혼직장인 여자들의 결혼의향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에 비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권소영 외, 2017; 고선강·여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중백, 2013; 박주희, 2017; 박혜민, 2017)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이 과거에 비해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혼 후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많아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령별 결혼의향 평균은 30대(30~39세) 3.47점, 20대(20~29세) 3.44점, 40대 이상 2.28점 순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p < .001$). 세 집단 간 세부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 한 결과 30대와 20대 집단이 40대 이상 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고선강·여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혜영·선보영, 2011; 원아름·박정윤, 2016; 탁현우, 2017)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또한 미혼남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의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들(서정연, 2018; 이삼식, 2006)과 유사한 결과이다. 미혼직장인들이 20대에서 30대까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다가, 40대에 진입하면서 결혼보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삶을 준비하는 미혼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교육기간에서는 고졸 이하 (12년) 2.98점, 대학원 (17년) 이상이 3.27점, 대졸 이하(16년)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p < .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졸 (16년)이하의 학력과 대학원 (17년)이상의 학력집단이 고졸이하 (12년) 학력집단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 청년남녀의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결혼의향도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권소영 외, 2017; 이정은, 2017; 한영선,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 되고, 삶의 질과 결혼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학력이 높은 미혼직장인이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미혼직장인의 자산총액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는 자산총액 2,501만 원~5,000만원 3.49점, 5,001~10,400만원 3.42점, 0~2,500만원 3.39점, 10,401만원 이상 2.9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산총액 2,501~5,000만원의 미혼직장인과 10,401만원 이상 집단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산총액 2,501~5,000만원의 미혼직장인들의 결혼의향이 10,401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금융자산 하위권의 미혼직장인 남성이 중위권에 비해 결혼의향이 감소하고, 금융자산 하위권의 미혼직장인 여성은 중위권보다 결혼의향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연구(진달래, 2013)의 결과와 배치된다. 경

제자원의 소유가 안정된 결혼생활과 연관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고, 고액의 자산 소유 미혼층의 경우 결혼보다 자아실현 욕구 등 본인의 관심 수준이 높은 분야에 더 높은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부채유무에 따른 결혼의향 평균은 부채가 '없다'는 집단이 3.40점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다'는 집단은 3.1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1$). 부채가 없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가구 부채가 많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연구(주희정·김민석, 2018)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미해결 상태의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미혼직장인의 결혼 결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2)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부모경제수준, 거주현황,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 부모경제수준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경제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

인의 결혼의향이,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경제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 평균은 3.77점으로 나타났고, '중'은 3.30점, '하'는 3.07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중' 수준, '하' 수준으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부모의 금융자산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미혼여성이 결혼의향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한영선, 2015)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혼층이 예측 불가능한 현시대의 흐름에 대해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으면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가능성이 있고, 부양 부담감도 낮아 결혼의향도 높게 갖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보통이거나 낮게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에 따른 결혼의향에 대해 '높다' 3.84점, '보통이다' 3.25점, '낮다' 2.91점 순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다'고 인식하는 미혼직장인 집단의 결혼의

〈표 3〉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³⁾	
성별	여자	269	3.10	1.316	17.328	.001		
	남자	211	3.58	1.186				
연령	20대(20~29세)	239	3.44	1.211	22.919	.001	A	
	30대(30~39세)	184	3.47	1.250			A	
	40대 이상	57	2.28	1.221			B	
교육기간	고졸 이하(12년)	59	2.98	1.345	2.429	.089	A	
	대졸 이하(16년)	348	3.38	1.214			A	
	대학원(17년) 이상	73	3.27	1.502			A	
개인 관련 변인	월평균 소득	0~200만원	123	3.18	1.331	1.148	.329	
		201~300만원	171	3.32	1.195			
		301~360만원	69	3.54	1.183			
		361만원 이상	117	3.32	1.400			
본인 자산총액	0~2,500만원	125	3.39	1.184	4.18	.006	AB	
	2,501~5,000만원	127	3.49	1.147			A	
	5,001~10,400만원	108	3.42	1.261			AB	
	10,401만원 이상	119	2.97	1.461			B	
부채 유무	있다	172	3.16	1.299	3.970	.047		
	없다	308	3.40	1.266				
부모 관련 변인	부모 경제수준	하	168	3.07	1.417	9.324	.001	B
		중	219	3.30	1.204			B
		상	93	3.77	1.075			A
거주현황	부모와 동거 전월세 따로 기타	부모와 동거	268	3.38	1.265	1.249	.288	
		전월세 따로	155	3.18	1.322			
		기타	57	3.33	1.244			
주택결혼 비용지원 가능성	낮다 보통이다 높다	낮다	186	2.91	1.351	24.931	.001	C
		보통이다	135	3.25	1.131			B
		높다	159	3.84	1.136			A

³⁾ 사후검증 결과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 같은 기호를 부여함

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낮다’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 공간 마련과 예식비용이 결혼이행에 필수적 요소이고, 고비용이 소요되므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결혼의향 가능성도 높게 가질 수 있다.

3) 직장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미혼직장인의 직장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용형태와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1$, $p < .001$). 정규직의 결혼의향 평균이 3.38점, 정규직 외 고용 종사자의 결혼의향 평균이 3.13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1$). 이 결과는 정규직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이행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들(박주희, 2017; 주희정·김민석, 2018; 탁현우, 2017; 한영선, 201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경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어 결혼의향을 높게 가질 수 있다.

미혼직장인의 직무만족도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상’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3.4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의 경우는 3.24점, ‘하’는 2.57점 순으로 나타났는데($p < .001$), 사후검증 결과 직무만족도 ‘상’과 ‘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결혼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을

경우 체감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수 있고, 정서적 여유가 생겨 호감 대상자를 만날 경우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결혼의향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

미혼직장인이 인식하는 가족친화조직문화에 따른 결혼의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3.64점, ‘중’ 3.34점, ‘하’ 2.89점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집단과 ‘중’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하’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 일·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결혼 기회가 큰 이유로 보고된 연구(탁현우, 2017)와 유사한 결과이고,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여성의 결혼의향이 크지 않다는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이 높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근무 시간 동안 업무에 집중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 이성교제 기회도 의지에 따라 가질 수 있고, 결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미혼직장인이 인식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4〉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에 따른 결혼의향 차이

항목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p	Scheffe ⁴⁾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정규직	351	3.38	1.295	3.524	.061	
		정규직 외 고용형태	129	3.13	1.234			
	근무 직종	전문경영직	94	3.41	1.477	1.023	.360	
일반관리사무직		204	3.36	1.138				
기술기능생산직 기타 등		182	3.21	1.326				
직무 만족도	하	28	2.57	1.372	7.424	.001	B	
	중	237	3.24	1.247			A	
	상	215	3.49	1.271			A	
가족친화 조직문화	하	147	2.89	1.335	14.567	.001	B	
	중	157	3.34	1.147			A	
	상	176	3.64	1.257			A	
정책 관련 변인	자금주택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7	2.04	1.255	20.101	.001	C
		보통이다	38	2.79	1.277			B
		필요하다	414	3.44	1.229			A
일자리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0	3.60	1.392	1.479	.225		
	보통이다	49	3.06	1.329				
	필요하다	411	3.33	1.269				
결혼준비 정책필요성	필요하지 않다	217	3.15	1.403	6.162	.002	B	
	보통이다	97	3.21	1.136			B	
	필요하다	166	3.59	1.150			A	

⁴⁾ 사후검증 결과 동일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 같은 기호를 부여함

자금주택정책필요성에 따른 결혼의향 평균은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경우 3.44점, '보통이다' 2.79점, '필요하지 않다' 2.04 점의 순으로 조사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사후검증 결과 자금주택정책이 '필요하다'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로 인식하는 집단이, '필요하지 않다'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준비 자금과 주택마련자금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이 시행될 경우, 미혼직장인의 심적 부담감이 줄어 결혼의향도 높게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혼준비정책필요성에 따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1$). '필요하다' 3.59점, '보통이다' 3.21점, '필요하지 않다' 3.15점의 순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사후검증 결과 결혼준비지원정책이 '필요하다'로 인식하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보통이다'와 '필요하지 않다'로 인식하는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결혼이행을 위해서는 준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미혼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결혼준비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 결혼의향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자원과 연관되는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총 4 단계로 개인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 순으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고, 그룹별로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개인 관련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였고, 미시체계인 부모 관련 변인을 2단계에 추가 투입하였으며, 중간체계인 직장 관련 변인을 3단계에 추가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인 정책 관련 변인을 투입하여 영향력과 설명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모형 1은 개인 관련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기간, 월평균 소득, 자산총액, 부채유무를 투입하였다. 모형 1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개인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연령의 영향력($\beta = -.237, p < .001$)이 성별의 영향력($\beta = -.203, p < .001$)에 비해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모형 1에 부모 관련 변인인 부모월평균소득, 부모 경제수준, 거주현황,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추가 투입하였다. 모형 2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부모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17.4%로, 모형 1에 비해 5.1% 증가하였으며, 설

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부모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205, p < .001$)으로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과 연령이 모형 2에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개인 관련 변인을 분석한 모형 1에 비해 성별의 영향력($\beta = -.192, p < .001$)과 연령은 영향력($\beta = -.160, p < .05$)이 하락하였다.

모형 3은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에 직장 관련 변인인 고용형태, 직종, 직무만족도, 가족친화조직문화 변수를 추가로 투입하였다. 직장 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3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독립변인의 설명력은 4.7% 증가하여 22.1%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3에서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75, p < .01$)가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 2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성별($\beta = -.187, p < .001$)과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48, p < .01$)은 모형 3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냈다. 모형 3에서 자산총액이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 변인으로 새롭게 나타났다($\beta = -.143, p < .05$). 자산총액이 적은 집단의 결혼의향이 많은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모형 4는 모형 3에 정책 관련 변인으로 자금주택정책필요성, 일자리정책필요성, 결혼준비정책필요성 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4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대한 정책 관련 변인의 설명력은 모형 3에 비해 8%가 증가하여 30.2%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의 변화량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책 관련 변인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 = .351, p < .0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beta = -.192, p < .01$)변인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 변인의 영향력이 일자리정책필요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도 모형 3에서 영향력을 나타낸 성별($\beta = -.149, p < .01$)과 자산총액($\beta = -.138, p < .05$),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83, 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52, p < .01$)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모형 4에서는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 = .351, p < .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 = -.192, p < .01$),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83, 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52, p < .01$), 성별($\beta = -.149, p < .01$), 자산총액($\beta = -.138, p < .05$)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1에서 성별과 연령이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쳤고, 성별의 영향력($\beta = -.203, p < .001$)보다 연령의 영향력($\beta = -.237, p < .001$)이 더 크게 나타났다. 미혼직장인 남자의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어린 미혼직장인이 많은 미혼직장인보다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남성의 결혼의향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고선강·어성연, 2013; 권소영 외 2017; 김정석, 2006; 김종백, 2013; 박주희, 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미혼남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고선강·어성연, 2013; 김정석, 2006; 김혜영·선보영, 2011; 원아름·박정운, 2016; 탁현우, 201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감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결혼의향을 낮게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이 어린 미혼직장인은 근무 경력이 짧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연령 많은 대상자들보다 적어 결혼의향을 갖기 쉬울 수 있다.

가족자원 중 부모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2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205, p < .001$)이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결혼자금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경우 기능적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혜민·전귀연, 2018)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 제공이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연구(임선영·박주희, 201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집단의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조진영, 201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계의 경제적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유의한 변수로 밝혀진 연구(홍성희, 202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혼직장인이 스스로 축적한 경제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혼의향을 갖기 어렵지만,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감지되고 호감 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혼의향 갖기가 용이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장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3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75, p < .01$)가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직장의 조직문화가 가족친화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일·가정양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크지 않고,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개선 제공 시 결혼을 고려할 의사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혜영·선보영,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전문직 여성의 경우 장기간 출산휴가 등 사용 시 직장에서의 도태될까 걱정이 되고, 직장 내 과도한 업무가 자원고갈을 유발하여 이성교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어성연 외, 2010)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부담, 일·가정 갈등으로 인한 결혼기피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탁현우, 2017)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하면 미혼자일 때보다 역할이 증가하게 되는데, 직장이 가족친화조직문화인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경직된 조직인 경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어 조직문화가 결혼의향에 큰 영향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책 관련 변인이 투입된 모형 4에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금주택정책필요성과 일자리정책필요성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 = .351, p < .001$)변인은 결혼의향에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정책필요성($\beta = -.192, p < .01$)변인은 결혼의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영향력이 일자리정책필요성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결혼지원정책 가운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국가의 결혼지원정책필요성에 동의할수록 결혼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이정은,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고, 신혼부부주택마련지원 등 직접적 지원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박주희, 201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결혼지원정책 중 주택자금융자, 결혼자금 융자 등의 활용가능성, 결혼장려 관련 정책의 효율성 인식이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혜영·선보영, 2011; 진달래, 2013)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결혼에 필수적 요소인 결혼자금과 주택정책의 효율성이 결혼의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종 모형인 모형 4에서 개인 관련 변인과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주택정책필요성($\beta = .351, p < .001$), 일자리정책필요성($\beta = -.192, p < .01$),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beta = .183, p < .001$), 가족친화조직문화($\beta = .152, p < .01$), 성별($\beta = -.149, p < .01$), 자산총액($\beta = -.138, p < .05$)의 순으로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지원정책 중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일자리정책필요성을 낮게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족자원에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직장이 가족친화적일수록 결혼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 재검토하여, 미혼층의 욕구에 부합하는 결혼지원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차원에서 직장의

〈표 5〉 개인 관련 변인, 부모 관련 변인, 직장 관련 변인, 정책 관련 변인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변수	결혼의향 (N=450)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S.E.)	β	t	B(S.E.)	β	t	B(S.E.)	β	t	B(S.E.)	β	t	
개인 관련 변인	성별	-.519(.118)	-.203	-4.419***	-.493(.117)	-.192	-4.199***	-.478(.117)	-.187	-4.092***	-.381(.113)	-.149	-3.384**
	연령	-.048(.012)	-.237	-3.958***	-.032(.013)	-.160	-2.558*	-.023(.013)	-.115	-1.842	-.016(.012)	-.079	-1.310
	교육기간	.067(.037)	.086	1.817	.044(.037)	.056	1.198	.044(.037)	.056	1.166	.036(.036)	.046	.998
	월평균소득	.226(.142)	.087	1.587	.235(.140)	.090	1.676	.169(.145)	.065	1.168	.146(.138)	.056	1.058
	자산총액	-.002(.002)	-.084	-1.318	-.003(.002)	-.121	-1.919	-.004(.002)	-.143	-2.287*	-.003(.002)	-.138	-2.296*
	부채유무	-.201(.121)	-.076	-1.659	-.121(.126)	-.046	-.962	-.188(.125)	-.071	-1.510	-.160(.119)	-.060	-1.337
부모 관련 변인	부모 월평균소득				-.008(.009)	-.042	-.821	-.003(.009)	-.017	-.346	-.004(.009)	-.024	-.512
	경제 · 거주 거주현황				.122(.078)	.083	1.565	.076(.078)	.051	.970	.094(.075)	.064	1.263
	주택결혼비용 지원가능성				-.034(.123)	-.013	-.279	-.076(.121)	-.030	-.627	-.068(.116)	-.026	-.582
	고용 · 직무 만족도				.212(.053)	.205	4.033***	.153(.053)	.148	2.893**	.189(.051)	.183	3.728***
직장 관련 변인	고용형태						.156(.141)	.053	1.110	.052(.135)	.017	.383	
	직종1						.126(.155)	.039	.812	.213(.149)	.066	1.428	
	직종2						.026(.129)	.010	.202	.096(.123)	.036	.782	
	직무만족도						.091(.085)	.063	1.074	.063(.082)	.043	.764	
정책 관련 변인	가족친화 조직문화						.207(.066)	.175	3.128**	.180(.064)	.152	2.809**	
	자금지택정책 필요성									.575(.092)	.351	6.224***	
	일자리정책 필요성									-.321(.093)	-.192	-3.456**	
	결혼준비정책 필요성									.091(.048)	.084	1.906	
상수		3.012			2.119			1.175			-.051		
R ² (Adj. R ²)		.123 (.111)			.174 (.156)			.221 (.194)			.302 (.272)		
ΔR^2					.051***			.047***			.080***		
F		10.388***			9.272***			8.226***			10.338***		

*p<.05, **p<.01, ***p<.001

※ 가변수의 준거집단(성별 : 남자=0, 부채 유무 : 없다=0, 거주현황 : 전월세파로거주기타=0, 고용형태 : 정규직아닌 고용=0, 직종1 : 전문경영직 아닌 직종=0, 직종2 : 기술기능생산직 아닌 직종=0)

가족친화조직문화 정착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직장
 에서 일·가정양립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중인 제
 도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모의 지원과,
 조직문화, 결혼지원정책이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결혼
 지원정책필요성 변인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결혼지
 원정책 가운데 자금주택정책필요성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함을 감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효율적 정책 추진의 필
 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결혼의향 평균점이 중간수준보

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비혼보다 결혼에 더 관심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혼직장인이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자금주택정책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써 결혼의향을
 높이고 결혼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자원과 밀접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미혼직장인이 결혼의향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미혼직장인남성과 여성에게 정책 관련 변인 다
 음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주거공간마련과 결혼비용
 이 결혼결정에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현시대 미혼층의 경제
 적 자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경
 제적 지원이 자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가족자원의 감소는 노년기 부모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적서비스 비용 증가로 이
 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혼층이 스스로 자원을 축적하여 독립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도록, 청년층 육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
 자리 창출과 주거비용, 신혼집 마련자금 지원 등 경제적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결혼지원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직장의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은 미혼직장인의 결혼

의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확인되었다. 중간체계인 직장은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위한 직무 수행의 장이 아니다. 조직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친화조직문화 수준이 미혼직장인의 가정생활과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장에서 부여되는 과도한 업무가 비자발적 만혼화로 이어진다는 연구(어성연 외, 2010)와 일·가정갈등이 결혼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탁현우, 2017)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족친화조직문화와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 관련 연구가 부족한데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성 평등적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일터에 가족친화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실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도입도 시급하다.

넷째, 미혼직장인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결혼의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학자금과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되는데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남성보다 여성이 부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밝혀진 바 있다(주희정·김민석, 2018). 부채 상황 시기와 상황 방법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미혼층을 위한 대출 및 상황에 대한 유연성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미혼직장인과 전체 미혼층이 가족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결혼의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가와 기업 등 범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며,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제도와 정책은 광역환경이 포함된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이 풍부할 경우, 가족 고유의 자원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자립 가능하도록 청년층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은 자녀의 결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부모의 노후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돌봄의 사회적비용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년층지원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청년층은 경제력, 고용, 안정성에서 중장년과 노인에게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초기 청년은 고용과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보였고, 후기 청년은 주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김문길 외, 2017).

둘째, 혼인을 상충을 위해 청년주거지원, 결혼비용지원, 출산 및 양육지원 등을 비롯한 통합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저출산 정책인 M&P Packages는 결혼, 출산, 양육과 직접적 관련 있는 6개 분야 26개의 핵심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결혼 및 주거지원이 강조된다. SDN(Social Development Network)은 미혼남녀들에게 협력기관과 공인된 데이트 알선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다. 주문식 아파트를 구매하는 생애 최초 신청자들에게 우선적 분양권 제공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마련보조금(CPF Housing Grants)을 제공, 공공주택 구매 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김명희, 2017). 일본은 신신엔젤정책까지 시행했지만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자,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기본으로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연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행중이다(김명희, 2017).

셋째, 직장 관련 정책이 가족자원 형성과 축적의 주요 요인이 되므로, 가족친화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국가차원에서 기업과 직장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장시간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일·가정양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족친화조직문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공공기관, 정부기관, 민간대기업, 상용근로자, 사무직을 제외한 직종 종사자들의 체감 활용수준은 낮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 부여하도록 규정했으나, 10일 부여하고 있는 스웨덴, 뉴질랜드에 비해 늦고, 2주 부여하는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보다 부족하다(고용노동부, 2019). 스웨덴은 총 480일의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시행중이고, 90일까지 부성휴가의무사용제도가 시행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61.1%이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의 휴직 소득대체율은 100.0%, 프랑스의 소득대체율은 93.5%이다(한국노동연구원, OECD, 2018).

넷째, 가족자원의 활용 없이 청년층 스스로 자립을 위한 경제적 자원 축적이 가능하도록 미혼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창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청년일자리 해외취업지원정책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창출이 더욱 시급하고, 정규직 의무채용 비율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참고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혼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전체 미혼층의 의견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째,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대도시 거주 직장인을 중심으로 편의표집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중소지방도시 직장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셋째, 결혼지원정책필요성과 결혼의향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

후속 연구 진행을 위해 참고할 사항으로는 첫째, 가족친화조직문화 측정도구가 외국에서 개발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과 우리의 문화와 유리된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부합하는 가족친화조직문화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자원과 관련된 부모의 주택결혼비용지원가능성 척도 문항은 단일문항 평정척도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는데, 하

위 세부적 내용까지 측정 가능한 척도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자원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관된 변수의 척도를 개발하고 영향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고선강·어성연(2013). 30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1), 63-79.
- 2) 고용노동부(2019).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개정법률설명 자료.
- 3) 권소영·강시은·엄세원·박지수·이재립(2017). 청년 남녀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세대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4), 3-25.
- 4) 권중돈·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5) 김근주(2018). 근로시간법제의 현황과 과제. 월간노동리뷰, 159, 9-21.
- 6) 김기연·신수진·최혜경(2003).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87-99.
- 7) 김명희(2017). 일본과 싱가포르의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법과 한국에의 시사점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1), 553-561.
- 8) 김문길·김태완·임완섭·정은희·김재호·안주영·김성아·이주미·정희성·최준영(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8), 285-301.
- 9) 김성준(2015). 왜 결혼이 늦어지는가?. 노동경제논집, 38(4), 57-81.
- 10) 김순미·고선강(2012).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59-76.
- 11) 김영란·장혜경·이윤석(2018). 가족계층에 따른 청년자녀세대의 성인기 이행 및 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16.
- 12) 김예리(2008). 가족생태이론에 기초한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관련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3)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14) 김중백(2013).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차이에 미치는 조절변수의 연구. 社會科學研究, 39(1), 167-189.
- 15) 김혜영·선보영(2011). 여성의 만혼화와 결혼의향-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12(2), 3-35.
- 16) 김혜영·선보영·김상돈(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2010(18), 1-277.
- 17) 박주희(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자원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6-207.
- 18) 박주희(2017). 취업미혼남녀의 결혼지원정책 만족도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및 수도권 결혼적령기 취업미혼남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4), 1-15.
- 19) 박지수·이재립(2016).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청년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6(10), 262-263.
- 20) 박혜민(2017).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박혜민·전귀연(2018). 미혼남녀의 정서적·당위적·기능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4), 53-80.
- 22) 방묘진(2004). 가족친화적 조직문화가 직장-가정갈등과 직장 및 가정생활에 미치는 경로효과 검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보건복지부(201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 24) 서정연(2018). 미혼남녀의 결혼의지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69, 371-393.
- 25) 어성연·조희금·고선강(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26) 왕석순·전주람·류경희(2015). 30-40대 싱글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분석. 인구교육의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7(2), 35-51.
- 27) 원아름(2015).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원아름·박정윤(2016). 이성교제 중인 미혼남녀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및 이성교제 관계의 질과 결혼이미지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24(1), 145-166.
- 29) 유계숙(2008). 가족친화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7-36.
- 30) 유계숙·최연실·성미애 편역(2003). 가족학이론: 관점과 쟁점. Pauline G. Boss, William J. Doherty, Ralph LaRossa, alter R. Schumm, Suzanne K. Steinmetz. 서울: 도서출판 하우.
- 31) 윤소영(2013).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가족경영학의 실천과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8-30.
- 32) 은기수(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7-71.
- 33)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34)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35) 이은혜(2015).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직업능력개발정책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이정은(2017). 미혼여성의 결혼의향 결정요인에 관한 통합적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7) 이지나 · 황명진(2018). 미혼남녀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71, 117-151.
- 38) 임선영 · 박주희(2014). 미혼자의 가족가치관, 부모의 자원 제공 요소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177-193.
- 39) 임소진 · 여성연(2011). 중년기 성인들이 인지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 생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4), 129-147.
- 4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 3 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 41) 정기선 (2009).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통계청. 통계개발원 (편). 한국의 사회동향, 48-54.
- 42) 정영금(2008). 가족자원경영학적 관점에서 본 일-가정 균형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14.
- 43) 조진영(2016). 30대 미혼성인의 가족주의 가치관, 부모관계 특성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회복지연구, 13(1), 59-86.
- 44) 조희금(2003). 가족자원경영 측면에서 본 건강가정육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3-56.
- 45) 주휘정 · 김민석(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8(2), 59-88.
- 46) 진달래(201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장려관련정책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7) 진달래 · 고선강(2013). 미혼직장인의 결혼의향에 관한 연구: -직장의 가족친화제도와 결혼장려 관련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59.
- 48) 최필선 · 민인식(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헤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 49) 탁현우(2017). 저출산 대책-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지원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7 학술발표논문, 2,013-2,036.
- 50) 통계청(2019). 한국의 사회지표 2018. 통계청(2019). 혼인·이혼 통계 2018.
- 51) 한국노동연구원(2018). 2016년 OECD 회원국의 취업자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http://stats.oecd.org>.
- 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 복지 실태조사.
- 53) 한영선(2015). 미혼 취업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패널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가정관리학회 2015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96-215.
- 54) 허창덕(2012).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의거한 장애인 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분석. 재활복지, 16(2), 57-80.
- 55) 홍성희(2019). 여성베이비부머의 결혼기 자녀에 대한 자원 이전 인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3(2), 61-78.
- 56) 홍성희(2020). 20-30대 남녀의 결혼제도 인식과 결혼의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4(1), 1-19.
- 57) 홍은영(2011). 미혼성인의 결혼의향 및 태도와 부모의존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8)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59) Bronfenbrenner .U.(1995).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S nature and design.
- 60) Thompson, C. A., Beauvais, L. L, & Lyness, K. S. (1999). When work-family benefits are not enough: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benefit utilization, organizational attachment,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3), 392-415.

■ 투 고 일 : 2020년 09월 20일
 ■ 심 사 일 : 2020년 10월 14일
 ■ 계 재 확 정 일 : 2020년 12월 07일